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참가를 원하는 화장품(스킨케어, 색조)·뷰티테크·유통플랫폼 등 관련 분야의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1. 「2025 서울뷰티위크」 행사 소개

- 목 적 : 글로벌 뷰티 트렌드 전시·체험 및 서울의 유망 기업 판로개척 지원
- 기 간 : 2025. 8. 28(목) ~ 8. 30(토) / 3일간
- 장 소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일대 (아트홀 1·2관, 어울림광장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안) : 기업전시, 비즈니스 강연, 토크콘서트, 피칭대회, 체험부스 운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 공식홈페이지 : seoulbeautyweek.or.kr

[2024 서울뷰티위크 추진성과]

- ▶ 기간/장소 : '24. 10. 1.(화) ~ 10. 3.(목) / DDP 아트홀1·2관, 어울림광장 등
- ▶ 행사내용 : 기업전시, 피칭대회, 수출상담, 토크콘서트, 뷰티체험 등
- ▶ 주요성과 : 참관객 50,569명, 참여기업 101개사(전시 84, 협력 17), 기업만족도 84.4%, 수주상담 543억원, 수출계약 125억원 등



2. 전시 참가기업 모집 개요

- 전시기간 : 2025. 8. 28(목) ~ 8. 30(토), 10:00~18:00
- 전시장소 : 아트홀 1관(TREND BEAUTY) -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다양한 뷰티 기업
아트홀 2관(SPECIAL BEAUTY) - 뷰티 플랫폼, 투자상담 및 슈퍼루키 리운지 등

○ 모집구분 및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비 고
단독부스	자체 부스 설치 가능한 국내·외 뷰티기업 ※ 기업규모 등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부스 위치 및 면적은 기업 선정 후 협의로 진행 ○ 선발시 면적만 제공
기본부스	서울시 소재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뷰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부스 위치 및 부스 타입은 기업 선발 후 배치하여 통보 ○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사무소)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 인증 확인서 보유 ※ 중소기업 세부 기준은 붙임2 참고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업체 ○ 기타 서울시 판단에 따라,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규모

전시장소	모집분야	모집규모	비 고
아트홀 1·2관	스킨케어	100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유관 기관 등 약 100여개사 - 예)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헤어·두피, 맨즈뷰티, 뷰티테크, 헬스, 이너뷰티, 라이프스타일 및 커머스플랫폼 등 ○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가 필요한 기업 ○ 분야별 신청기업 수를 고려해 분야별 선발기업 수 안분 예정
	색조		
	헤어·바디		
	뷰티테크		
	헬스& 라이프스타일		

3. 신청 기간 : 2025. 4. 29.(화) ~ 5. 19.(월)

○ 기업모집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개시	2025. 4. 29.(화)	-
신청 기간	2025. 4. 29.(화) ~ 5. 19.(월)	※ 이메일 신청서류 접수
결과 발표	2025. 5. 29.(목)	※ 서울시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보
전시 운영 기간	2025. 8. 28.(목) ~ 8. 30.(토)	

4. 신청 방법 : 이메일(seoulbeautyweek@gmail.com) 접수

- 참가신청 관련 문의처 : 서울뷰티위크 운영사무국(☎ 02-550-2527)

5. 선발방법

○ 모집구분별 선발방법

구분	선발방법
단독부스	○ 참가신청서 제출 기업 개별 협의를 통해 참여 여부 및 규모, 위치 등 결정
기본부스	○ 참가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가기업 선발 ○ 아래 평가기준표에 따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발 ○ 정량평가는 제출자료 기준으로 서울시 평가, 정성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내외 구성하여 평가 ○ 모집분야별 신청기업 수를 고려해 분야별 선발기업 수 안분 예정

○ 기본부스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요소	세부기준	배 점	비고	
합 계			100		
정성 평가	전시계획 및 기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품목의 행사와의 부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뷰티테크, 라이프스타일 등 	20	70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성 : 상품품질, 안전성, 판매 적합성 등 - 판촉력 : 유통채널 영업경험, 프로모션 역량 등 - 운영역량 : 상품관리능력(공급, A/S), 매장 운영 능력 - 공익성 : 기업가정신, 친환경 등 사회 기여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효과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준, 시장성, 예상 기대효과 등 	20		
정량 평가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개연도('23~'24년) 매출액 평균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미만 : 10점 - 1억~6억 미만 : 9점 - 6억~10억 미만 : 8점 - 10억 이상 : 7점 	10	서울시 평가	
	상시 종업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종업원수(공고일 이후 발급 고용보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 이하 : 5점 - 21인~50인 이하 : 4점 - 51인 이상 : 3점 	5		
	인증/포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인증 등 지적재산권 보유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건 이상 : 5점 - 2~4건 : 4점 - 1건 이하 : 3점 	5		
	참가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20.4월~공고일) 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회 이상 : 5점 - 3~5회 : 4점 - 3회 미만 : 3점 	5		
	서울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소재 기간(공고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 5점 - 3년~5년 : 4점 - 3년 미만 : 3점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5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항목은 불입의 첨부서류 참고 - 정량평가 총점(30점) 내에서 가산점 적용, 각 항목중 평점이 가장 높은 1건에 한해 가산점 반영 	+1		

6. 제출서류

- 불임의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참고

7. 참가기업 혜택사항

- 전시 참여

구 분	세부 제공사항
단독부스	- 전시공간(면적)만 제공 - 참가신청서 내 희망 면적 기재 (기본1부스 2.5*2.5m 기준, 최소 2부스, 5m*2.5m 이상)
기본부스	- 전시공간 및 기본부스 1식 제공 (기본면적 2.5*2.5m 내외) - 조명, 전기, 데스크 및 의자(1조) 등 제공 - 현장 판매 가능

-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비즈니스 지원

- 수출상담회 참가 및 바이어 미팅기회 제공 (* 별도 신청 필요)
- 투자 필요한 기업 대상 투자매칭 상담 및 글로벌 플랫폼 입점 상담 지원
- 판로개척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피칭대회 참가기회 제공
- 뷰티 플랫폼과 연계한 특별기획전을 활용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서울뷰티워크 공식홍보단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공식 홍보단 소속 인플루언서 콘텐츠 내 참여기업 제품 노출 및 체험 콘텐츠 제작
- 서울뷰티워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운영 홍보 매체를 통한 마케팅 지원

9. 기타 유의사항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가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선정규모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 참가기업 선발 예정
※ 예비 기업 중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순번	구분	서류명	비고
1	공 통 ※단독부스 신청시, 공통자료만 제출	참가신청서	<서식 1>
2		참가계획서	<서식 2>
3		제품소개서	<서식 3>
4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4>
5		참가자 서약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
7		기업현황표	<서식 6>
8		법인 : 표준재무제표(직전 2개년도) 개인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직전 2개년도)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각1부	-
10	기본부스 신청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서식6> 피고용인이 없는 경우 고용현황에 0명으로 작성	-
1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미제출)	-
12		중소기업 인증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13		최근 5년간 전시 참가이력	<서식 7>
14		보유 증서 및 포상 여부 확인	<서식 8>
15		참가기업 자가진단표	<서식 9>
16		기타 가점 증빙 서류	-
17		제품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등 소개자료	-
참가신청 접수방법		- 이메일(seoulbeautyweek@gmail.com) 접수 - 파일명을 각 서류명 순번을 반영하여 압축 후 제출 (각 서류 별 PDF 또는 HWP) (예 : 1. 참가신청서_(주)기업명) - 참가신청 관련 문의처: 서울뷰티위크 운영사무국 tel) 02-550-2527 e-mail)seoulbeautyweek@gmail.com	

[공통]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참가신청서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스킨케어 <input type="checkbox"/> 색조 <input type="checkbox"/> 헤어·바디 <input type="checkbox"/> 뷰티테크 <input type="checkbox"/> 헬스&라이프스타일		
부스타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독부스		<input type="checkbox"/> 기본부스
희망부스 수량 <small>※단독부스 신청기업</small>	(예) <u> 4 </u> 부스 (<u> 5 </u> × <u> 5 </u> m) <small>※ 1부스 2.5m×2.5m 기준</small>		1부스 (2.5 X 2.5m) <small>(기본부스는 수량 변경 불가)</small>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생산품			홈페이지
주소	본사	(-)	
	공장	(-)	
실무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휴대폰	일반전화	E-mail
참가신청서 외 지정서식	①참가신청서 ②참가계획서 ③제품소개서 ④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⑤참가자 서약서 ⑥기업 현황표 ⑦전시참가이력 및 증빙서류 ⑧보유증 및 포상여부 ⑨자가진단표		
기업현황	①사업자 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직년2개년도) ②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각1부 ③4대보험 가입자명부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중소기업 인증 확인서		
증빙자료 및 기타	①가점 증빙서류 ②카탈로그 등 기타 제반서류		
위와 같이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참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대표자 : (인)</div>			
서울특별시장 귀하			

상기 기재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요청자료 미제출 등을 포함한 참가규정 위반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참가계획서

기 업 명	
전 시 예 정 품 목	
활 등 계 획	※ 부스 운영진반에 대한 계획기술
출 품 예 정 기 술 / 제 품 경 쟁 의 력	※ 기술/제품명, 특성, 활용분야, 기술의 우수성, 경쟁제품 대비 품질 및 가격경쟁력 등 기재
기 타 (참 가 에 따 른 기 대 효 과)	※ 부스참가에 따른 유무형 기대효과 등 기재

[공통]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제품소개서

전시품목명	※ 전시제품별로 양식 추가하여 작성
전시품소개	<p>※ 별첨자료 첨부 가능(사진 자료는 필수이며, 별도 파일 첨부 바람)</p> <p>1. 브랜드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1)설립연도2)원산지3)브랜드 설명 <p>2. 상품 설명(종류, 가격대, 대표이미지등)</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p>3. 온오프라인 운영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오프라인 입점 현황2) 온라인 입점 현황

[공통]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서울뷰티워크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 참여자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서울시 뷰티산업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및 실무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기업 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서울뷰티워크 대행 운영사((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서울경제진흥원
- 개인·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기업명) 대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공통] 2025 서울뷰티위크 참가기업 서약서

‘2025 서울뷰티위크’ 전시 참가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하고,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반환, 기타 지원 사업 제외 등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2. 당사는 서울특별시의 선정결과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당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성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4. 당사는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5. 당사는 전시 참가와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을 준수하여 행사에 참여한다.
6.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장 5년 동안 보존될 수 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5 서울뷰티위크 참가기업 현황표

1. 매출 및 재정연황

가. 매출연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내 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액	(천US\$)	(천US\$)	(천US\$)
주요 수출지역			

나. 재정연황

구 분	2023년	2024년
자 본 금	(백만원)	(백만원)
부 채 액	(백만원)	(백만원)
부채비율	%	%
유동비율	%	%
자기자본비율	%	%

※ 표준재무제표에 의해 작성

2. 고용연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공고일이후)
종업원수	(명)	(명)	(명)

※ 4대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작성

3. 기업연혁 (기업설립일: 년 월 일)

연 도	주 요 내 용

※ 기업설립, 벤처인증, 인증 획득, 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2025 서울뷰티위크 참가기업 전시 참가이력

참여 전시 목록

연 번	전시명	전시기간	장 소	비 고
1				
2				
3				
4				
5				
6				
7				

- 국내·외 뷰티 관련 전시 해당
- 전시 참가 확인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 미인정
※2022~2024 서울뷰티위크 참가기업의 경우 참여 전시 목록 작성
(사무국 확인 후 참가이력 반영 예정,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비고란 변경 이력 작성)
- 참여이력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작성

2025 서울뷰티위크 참가기업 보유증 및 포상여부

1. 보유증서 목록

No.	제 목	발행 기관	등록 일자	유효 기한	구 분
1					
2					
3					
4					

- 보유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선도기업, 인증, 특허 등 기입 (증빙자료 제출)
- 현재 유효한 증서만 제출하며 의장, 상표등록증은 인정 안 됨.
- 유효기간 없는 증서의 경우, 최근 2년(2023.4월~공고일) 발급된 것만 인정
- 해당 증서가 없는 경우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작성

2. 정부 포상 및 수출탑 현황

No.	제 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1			
2			
3			
4			

- 정부, 지자체, 단체장 등에게서 받은 상 기재 (증빙자료 제출)
- 상이나 수출탑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작성

2025 서울뷰티워크 참가기업 평가기준 자가진단표

구분	평가요소	세부기준	배 점	자가진단점수	최종심사점수
합 계			30	참가기업 작성	
정량 평가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개연도('23~'24년) 매출액 평균금액 - 1억 미만 : 10점 - 1억~6억 미만 : 9점 - 6억~10억 미만 : 8점 - 10억 이상 : 7점 	10	참가기업 작성	
	상시 종업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종업원수 (공고일 이후 발급 고용보험 확인) - 20인 이하 : 5점 - 21인~50인 이하 : 4점 - 51인 이상 : 3점 	5	참가기업 작성	
	인증/포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인증 등 지적재산권 보유 및 포상 - 5건 이상 : 5점 - 2~4건 : 4점 - 1건 이하 : 3점 	5	참가기업 작성	
	참가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20.4월~공고일) 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여부 - 6회 이상 : 5점 - 3~5회 : 4점 - 3회 미만 : 3점 	5	참가기업 작성	
	서울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재 기간(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 5점 - 3년~5년 : 4점 - 3년 미만 : 3점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5	참가기업 작성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대상 - 세부항목은 붙임의 첨부서류 참고 	+1	참가기업 작성	

<가산점 배점표>

※ 정량평가 총점인 30점 내에서 가산점 적용, 항목중 평점이 가장 높은 1건에 한해 가산점 반영

구 분	항 목	평 점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1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1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1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
	8. 가족친화 우수기업	0.8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0.8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0.5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12. 모범납세자	0.3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붙임2

중소기업 세부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